

K-OTC 투자자 **핵심(요약)유의사항**

원금손실가능상품	본 위험고지 안내문은 K-OTC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K-OTC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K-OTC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과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.
	[주의]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K-OTC	K-OTC 시장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등록(지정), 해제,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입니다. 등록(지정)의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, 기업의 계속성, 경영투명성,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 심사제도가 없습니다. 이에 따라 K-OTC 시장에 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.
--------------	--

■ 유사상품과의 비교표

구 분	K-OTC	코넥스	국내주식
법적성격	증권 (원금손실가능)	증권 (원금손실가능)	증권 (원금손실가능)
만기	없음	없음	없음
주요상품	비상장 중소기업	중소·벤처기업 종목 등	코스피 200 종목 등
거래대상	매도·매수 가능	매도·매수 가능	매도·매수 가능
특징	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 체결 가격제한폭 존재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

■ **고객 권익보호**를 위한 안내사항 **[민원 우려로 속지 필요사항]**



- ① K-OTC는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
- ① 투자위험등급 : **1등급 [매우높은위험]**
- ②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 ~ 6등급(매우낮은위험)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동 상품의 위험등급은 1등급(매우높은위험)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. (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: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자산 및 수익률 변동성, 위험도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.)
- ③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: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해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- ④ [유동성위험 : 중도매매 허용] 본 상품은 중도매매가 가능하나,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
- ① K-OTC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② K-OTC시장 지정법인은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하며, 지정기업은 K-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.
- ③ K-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, 양도소득세(지방세 병과)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·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, 당사 영업점·고객센터 (TEL : 1588-6800)·홈페이지(<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>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심의필 R(최)-2023-054-001

K-OTC 투자자 유의사항

1. K-OTC 시장의 성격

K-OTC 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**장외시장으로서 등록(지정), 해제,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**입니다. 등록(지정)의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, 기업의 계속성, 경영투명성,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 심사제도가 없습니다. 이에 따라 **K-OTC 시장에 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.**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지정기업부의 특징

K-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. **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**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.

3. 매매방식

K-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(상대매매방식).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. 위탁증거금률은 100%입니다. 신규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~500%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$\pm 30\%$ 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4. 공시수준

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, **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 등록법인은 연 2 회 정기공시를 하고, 17 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,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. **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.** 종소·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,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5. 기업정보 확인방법

등록법인의 수시공시, 조회공시는 K-OTC 시장 홈페이지,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, 분·반기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(<http://www.seibro.or.kr>)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, K-OTC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6.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

K-OTC 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**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**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**K-OTC 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7.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

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 178 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,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락 거부 등 K-OTC 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8.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

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. 이에 따라 등록(지정)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등록(지정)법인(발행회사), 인수인, 소유지분이 1% 이상이거나 3 억원 이상인 투자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자)가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(전자공시시스템)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20 조 참고) 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9.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

K-OTC 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(0.18%,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참고), 양도소득세(지방세 병과)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·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K-OTC 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,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(☎1588-6800) 통해 문의하시기
바라며,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당사 홈페이지(<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>)
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·위험,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,
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, 최대손실 가능성, 수수료, 조기상환 또는
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,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■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

■ 판매직원 안내

- ◆ 판매회사 및 점포명 : 미래에셋증권 _____
- ◆ 판매직원 : 직위 _____ 성명 _____ (인 또는 서명)
- ◆ 판매직원 연락처 : _____

※ 본 계약서류(설명서 등)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